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81

제출일자 : 2026. 9. 28.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 권고에 따라 사용료(대관료)반환에 관한 위약금 부과를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에 준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나. 사용료(대관료) 반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민법」 제75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6. 8. 20. ~ 9. 9.)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100% 반환”을 “110% 반환 ※반환금액=총사용료+(총사용료의 10%)”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이용일”을 “: 실제 이용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용예정일 전 사용자 사정으로 취소신청을 한 경우(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반환금액=[총사용료-{총사용료×(계약상 사용기간 중 경과기간÷계약상 사용기간)}]-(총사용료의 10%) ※ 일단위 계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 각 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① (생 략) 1. ~ 6. (생 략) ② 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반환) ① ~ ③ (생 략) 1. 제10조제1항제6호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100%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이용료 잔액 반환 3. 사용예정일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 1일당 10%씩 90%까지 반환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반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 110% 반환 ※ 반환금액=총사용료+(총사용료의 10%) 2. ---------- : 실제 이용일---------- 3. 사용예정일 전 사용자 사정으로 취소신청을 한 경우(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반환금액=[총사용료-(총사용료×(계약상 사용기간 중 경과기간÷계약상 사용기간))]-(총사용료의 10%) ※ 일단위 계산.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